

노후아파트(30년이상) 소방안전대책 추진계획

노후아파트(30년이상)에 대한 다양한 소방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.

I 추진 배경

- 부시장님 요청(2019.3.12) “노후아파트에 대한 안전강화대책 강구 필요”
- 언론보도 ‘화재 무방비’ 노후 건물...서울 노후아파트 5곳(2019.2.23(토)조선닷컴)
 - 서울시 40년이상 노후아파트 소방시설 열악, 옥상문 잠기고, 대피로 쓰레기 가득 등
- 노후아파트는 시설이 노후화되어 화재 등 재난에 취약, 특별관리 필요
 - 전선, 소방시설 등이 노후화되어 화재위험이 높고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어려움

⇒ 노후아파트에 대한 다각적 화재안전대책 강구 필요

II 노후아파트 현황

※ 노후아파트 : 준공된 지 30년 이상 된 아파트

연도별 현황

구 분	계	1970년대	1980년대
단지	52	3	49
동	581	84	497

- 전체 아파트 272개 단지 중, 노후아파트 개 단지 (19.1%)
- 노후아파트 52개 단지 중, 80년대 아파트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 (74.5%)

층수별 현황

구 분	계	5층	6~10층	11~15층	16~20층	21층 이상
단지	52	5	9	37	1	0
동	581	198	45	329	9	0

- 15층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 (97.2%)

Ⅲ 노후아파트 소방안전위험

① 소방 및 피난시설 측면

① 노후아파트는 소방시설 또한 노후화 되어 화재시 작동불량 가능성

② 소방시설의 미설치로 초기대응 어려움

- (1981년 이전) 아파트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옥내소화전 미설치
- (1992년 이전) 아파트는 스크린클러설비 미설치

③ 아파트 세대 내 피난시설의 부족

- 1992년 이전 아파트는 경량칸막이 등 대피시설이 없어 화재피해 위험 높음.

② 소방활동 측면

① 지상에 이중 무질서 주차로 소방활동 장애

- 지하주차장이 없어 주차장이 부족, 이중주차 등으로 소방차 신속접근 곤란.

② 소방차 전용주차구역 준수의식 부족

- 주황색 소방차 전용주차구역 주차금지 의식 부족, 특히 야간은 더 심각

③ 출입구에 차단기 및 블라드 설치, 소방활동 장애

- 차단기, 블라드* 등은 소방차의 신속진입을 방해.

③ 안전의식 측면

① 나홀로 아파트는 안전관리 취약

-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협회의 역할 부족으로, 안전사각지대 발생

② 겨울철 난방기구 과다사용

- 겨울철 난방을 위해 전기장판, 난로 등 사용으로 화재위험 상존.

IV 추진 계획

① 신속한 소방차 진입을 위한 다각적 방안 강구

① 노후아파트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선 일제정비 <소방용수>

- 대 상 : 52개 단지 전체
- 방 법 : 신규설치 및 노후 구획선 정비토록 지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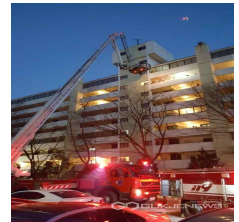
※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홍보 (100만원 이하 과태료, 2018. 8. 10 시행)

* 1회 : 50만원, 2회 이상 : 100만원



② 노후아파트 야간 불시 출동훈련 <대응계획>

- 52개 단지 전체 대상 야간 불시출동훈련, 소방차 직접 부서 시행
- 전용구역 주차위반사례 과태료 부과 / 소방차 길 터주기 동승 체험



③ 소방차 통행 커브지역 주차금지 표시 <소방용수>

- 대 상 : 52개 단지
- 설치구역 : 단지 내 주 진입로 또는 상습 주·정차 구역 내
- 방 법 : 현지조사 및 관계인 협의 후 설치 추진



④ 아파트 출입구 Non-Stop 출동시스템 <대응계획>

- 대 상 : 아파트 출입구에 차량 차단기 또는 블라드 설치 노후아파트
- 내 용
 - 아파트 출입구 입·출입 시스템* 확보
 - * 입·출입시스템 : 번호인식, 전자태그, 리모컨 등
 - 후문 등에 블라드 등을 탈착식으로 변경토록 조치



② 노후아파트 현장정보에 대한 현장 초기대응능력 강화

① 소방차 활동장애 차량 강제처분 실시 <소방용수>

- 대 상 : 노후아파트(52개 단지) 전체
- 방 법 : 소방차 진입장애시 강제 처분
- 내 용 : 긴급출동시 소방차 활동장애 시 강제처분 → (필요시 손실보상)

▶ 소방기본법 제25조(강제처분 등) 제4항 <시행 2018. 6. 27.>

④ 소방본부장,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,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▶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제5조(손실보상) <시행 2019. 3. 28.>

3.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. 다만,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 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.

② 거주민 참여 화재대피훈련 <대응계획>

- 대 상 : 노후아파트(52개 단지) 거주민
- 방 법 : 화재 시 초기대응능력 향상 자체훈련
- 내 용
 - 거주자 참여 실제 화재전파 및 대피훈련
 - 거주자 중심 소화기 등 소방시설 활용 초기대응 훈련

